

제 호

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
2. 주 소
3. 검사장의 주소
4. 대표자성명
5. 지정번호
6. 지정기간
7. 검사분야

위 기관을 「항로표지법」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